
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6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행복관의 행·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, 시민행복관의 사업범위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함을 통하여 적극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,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·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민행복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 3조).
- 나. 시민행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 및 채용 근거를 규정함.
(안 제5조).
- 라. 예절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·보급을 위한 시민 강사 양성 및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- 마. 시민행복관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바.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2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163,470천원

- 운영비 : 87,820천원 (인건비 : 42,000천원)
- 재료비 및 유지비 : 10,000천원
- 비품 및 장비구입비 : 65,650천원

□ 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11. 9. ~ 2007. 11. 19.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·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윤리 의식을 높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 시민행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안산시 시민행복관(이하 “행복관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장미내음길 30(고잔동)으로 한다.

제3조(이용대상) 행복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행복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
2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강사 양성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
4.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
5.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

제5조(강사) ① 시장은 행복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들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
 2.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
- 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시민강사 양성) 행복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7조(교육비용) 행복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행복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

2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평가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민간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.

제9조(운영비의 지원)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행복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복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함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행복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행복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·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기타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
2. 행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
3.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, 제8조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·자료·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행복관의 위·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가족여성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가족여성과과장 하희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담당 시성명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순덕 (행정 2209)
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
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4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12. 12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예절관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“시민행복관”을 “행복예절관”으로 바꾸어 명칭을 새롭게 하고,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에 추가하였으며, 사업내용에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 놀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주 요 골 자

- 조례안 제명을 “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으로 수정함.
- “시민행복관”(이하 “행복관”이라 한다)을 “행복예절관”(이하 “예절관”이라 한다)으로 수정함.(안 제2조)
- 이용대상에 거주외국인을 추가함.(안 제3조)
- 사업에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 보급을 신설함.(안 제4조제2호)
-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함.(안 제8조제2항)
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을 “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 및 효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시민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시민행복관(이하 “행복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행복예절관(이하 “예절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이용대상)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, 거주외국인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.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.

제4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하고, 제2호 “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”을 제3호 “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”으로 하며, 제3호를 제4호로, 제4호를 제5호로,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

제5조제1항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호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중 “행복관”을 “예절관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·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윤리 의식을 높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 시민행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안산시 시민행복관(이하 “행복관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장미내음길 30(고잔동)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이용대상) 행복관의 이용대상은 안산 시민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 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사업) 행복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신 설> 3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4. (생략) 5. (생략) <p>제5조(강사) ① 시장은 행복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들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시민강사양성) 행복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교육비용) 행복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 및 효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생활화 함으로써 시민 자긍심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행복예절관(이하 “예절관”이라 한다).....</p> <p>.....</p> <p>제3조(이용대상)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 시민, 거주외국인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.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</p> <p>제4조(사업) 예절관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원안과 같음) 2.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 3. 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4. (원안 제3호와 같음) 5. (원안 제4호와 같음) 6. (원안 제5호와 같음) <p>제5조(강사) ①예절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~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민강사양성) 예절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7조(교육비용) 예절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8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행복관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운영비의 지원)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행복관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복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는 행복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1조(지도감독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행복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 ·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· 서류 또는 기타 관련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행복관의 위 · 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 <u>예절관</u>..... 1. ~ 2. (원안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운영비의 지원)<u>예절관</u>..... <u>예절관</u>.....</p> 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② (원안과 같음) ③<u>예절관</u>.....</p> <p>제11조(지도감독)<u>예절관</u>.....</p> <p>제12조(위탁의 취소) ① (원안과 같음) 1. (원안과 같음) 2. <u>예절관</u>..... 3. (원안과 같음)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) <u>예절관</u>.....</p>